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밀조사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상향 적용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3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밀조사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상향 적용	3
※ 참고자료	9
1.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체계도	9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3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

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밀조사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상향 적용

현행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및 제23조제2항제2호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제30조(벌칙) ----- ----- ----- -----.
<u><신설></u>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 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과태료) ①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13. (생략) ③ (생략)	----- -----. 1. 1의2. (현행과 같음) <삭제> 3.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1)에 따르면 정화책임자에게 토

- 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파악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조제1항3)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오염

-
-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⑤ 삭제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 발견 신고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등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2월 기준으로 진행중인 정밀조사 현황 건수를 살펴보면 제11조에 따른 토양오염의 정밀조사 명령은 85건, 제14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 28건 등 총 160건으로 나타났음.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지자체장의 정밀조사 명령 실적]

(단위: 건)

연도	합계	제11조제3항 근거	제14조제1항 근거	제15조제1항 근거
2024.2월 기준 진행중인 정밀조사 현황	160(9*)	85(5*)	28(1*)	47(3*)

주) *는 이전 정밀조사 명령을 미이행하여 다시 명령한 정밀조사 건수임.

자료: 환경부

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 자료 등이 부족함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책임자 등이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제2호4)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감수하며 정밀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적기에 토양오염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토양정밀조사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4)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정밀조사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토양오염을 적기에 발견하여 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⁵⁾를 참고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행 기간이 종료된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30조(벌칙)제18호⁶⁾를 신설하여 해당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같은 조 제1호의3⁷⁾에 토양정밀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오염 규모를 축소되도록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의 조문 정비도 필요해 보임.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07호, 2023.3.28.>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안 제30조(벌칙)

18.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문 의 처
02) 6788-5533

참 고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체계도

